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환경보건법」이 개정(‘24.3.19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관련 사항 신설(안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10까지)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대상, 신청 및 발급, 전자이용권 시스템 구축·운영, 전담기관 지정기준 및 수행업무, 전담기관 지정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규정 신설

나. 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사항 추가 및 신설(안 제22조의제9항)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에게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등 위탁 조항 신설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항 삭제 및 신설(안 제22조의2제8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무 조항 신설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부터 제13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3조의6(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보건

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3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나.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이용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7(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은 제13조의6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자이용권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환경보건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발급받은 환경보건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경보건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환경보건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8(환경보건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의용권 운영 사업
2. 환경보건의용권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운영
3. 환경보건의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4. 환경보건의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보건의용권 운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3조의9(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제22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
2.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4.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5. 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의 회수 또는 환수에 관한 업무

제22조의2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무

별표 1의2부터 별표 1의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2]

환경보건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13조의6제2항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월평균 보수
4. 「고용보험법」 제46조, 제48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수급일수 등에 관한 자료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및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자료
6.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자격정보 등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정보에 관한 자료
8. 「국민연금법」에 따른 소득월액, 가입자, 자격정보, 연금 및 일시금 급여액 등 국민연금원부에 관한 자료
9.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에 관한 자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휴업, 폐업 정보, 상가임차보증금)에 관한 자료
10. 「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군인 재해보상급여에 관한 자료
1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연금에 관한 자료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의 거래에 관한 자료(전월세거래 정보로 한정한다)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부에 관한 자료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관한 자료
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액에 관한 자료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관한 자료
16.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17.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및 회원권의 시가표준액, 자동차세에 관한 자료

[별표 1의3]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기준(제13조의9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 3) 환경보건서비스 사업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0조의5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8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5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나. 법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8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5 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나. 법 제20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8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5제1항제2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	----------------	-------------	-------------	-------------

[별표 1의4]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3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2. 개별기준

행정처분 사유	근거 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업무 정지 기간	과징금 금액
가. 법 제20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8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6 제1항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나. 법 제20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제13조의8 제1항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20조의6 제1항	2개월	3백만원	4개월	7백만원	6개월	1천만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5(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 법 제2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u>1.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13세 미만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및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u> <u>2.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거주기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u> <u>3.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u>

<신 설>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13조의6(환경보건이용권의 신
청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
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
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
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
함한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3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
우는 제외한다)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공 동의서

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
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
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
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

<신 설>

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
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
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
본

나.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위임장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
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이용
권의 신청·발급 및 사용 관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
기 위하여 전자이용권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
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7(환경보건이용권의 발
급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은 제
13조의6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
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보건이
용권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 설>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전자이용권 시스템을 통해 필요한 환경보건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환경보건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이용자가 발급 받은 환경보건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경보건이용권을 회수하거나 환경보건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8(환경보건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20

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환경보건 지원사업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

3.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의4 제1항에 따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사업
2.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운영
3. 환경보건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보건센터·환경성질환예방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4. 환경보건이용권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환경보건이용권 운영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3조의9(전담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13조의10(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 등에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삭제 ② ~ ⑧ (생략) <u><신설></u>	<u>다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 4와 같다.</u> 제22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u>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에게 위탁한다.</u> 1. <u>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업무</u> 2. <u>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u> 3. <u>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u> 4. <u>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자이용권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u> 5. <u>제13조의7제4항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의 회수 또는 환수에 관한 업무</u>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u><신설></u> 6.·7. (생략)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법 제20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환경보건이용권 발급에 관한 사무</u> 6.·7.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6762